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4
----------	------

제출연월일: 2018. 8.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핵심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시책추진담당관) 신설에 따라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1) 일반직 5급 증원 : 66명 → 67명 (+1)
- 2) 일반직 6급 이하 감원 : 1,191명 → 1,190명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기 타

- 1) 입법예고(2018. 8. 1 ~ 2018.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평가 제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평가 제외)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1,275	1,275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268	1,268			
3급	1	1			
4급	8	6	1	1	
5급	67	36	2 (행정·별정)	12	17
6급 이하	1,190	1,190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6	6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5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단위: 명)</p>						<p>[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단위: 명)</p>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동
총 계	1,275	1,275				총 계	1,275	1,275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268	1,268				일반직 계	1,268	1,268			
3급	1	1				3급	1	1			
4급	8	6	1	1		4급	8	6	1	1	
5급	<u>66</u>	<u>35</u>	2 (행정·별정)	12	17	5급	<u>67</u>	<u>36</u>	2 (행정·별정)	12	17
6급 이하	<u>1,191</u>	<u>1,191</u>				6급 이하	<u>1,190</u>	<u>1,190</u>			
전 문 경력관	2	2				전 문 경력관	2	2			
별정직 계	6	6				별정직 계	6	6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5	5				6급 상당 이하	5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6급 이하(-1) → 5급(+1) 조정에 따른 급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직급 조정에 따른 급여 추가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한보경 (연락처 ☎2286-5096)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4.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17.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8. 8. 20.

다. 상정일자: 2018. 8. 29.

(제240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행정관리국장

나. 제안이유

핵심 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시책추진담당관) 신설에 따라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일반직 5급 증원 : 66명 → 67명 (+1)

2) 일반직 6급 이하 감원 : 1,191명 → 1,190명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기 타

- 1) 입법예고(2018. 8. 1 ~ 2018.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평가 제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평가 제외)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사업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은 5급 정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191명에서 1,190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안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